

보도자료 1

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21.(화) 10:00 2022. 6. 21.(화) 석간	배포 일시	2022. 6. 21.(화) 10:00
담당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	책임자	과 장 엄대섭 (044-202-7347)
		담당자	서기관 이영기 (044-202-7352) 사무관 천춘희 (044-202-7359)
<공동>	고용서비스정책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	책임자	팀 장 이도경 (044-202-7919)
		담당자	사무관 배혜영 (044-202-7909) 사무관 박효순 (044-202-7225)
<공동>	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	책임자	반 장 박병기 (044-202-7292)
		담당자	사무관 조병돈 (044-202-7305)

7.1.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

□ 정부는 6월 21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·의결했다.

○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적용

○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*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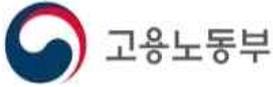
* 정보기술(IT) 소프트웨어 기술자, 화물차주(유통배송기사, 택배 지·간선기사, 특정품목운송차주), 골프장 캐디, 관광통역안내사, 어린이통학버스기사

-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·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,
 - * ('20.12.~)예술인 → ('21.7.~)노무제공자(특고) 12개 직종 → ('22.1.~)플랫폼 기반 2개 직종(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)
-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위원회(3.4.)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,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.
 - * 5개 직종 종사자의 규모는 총 34만명
- 더불어,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*,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.
 - * 소프트웨어기술자, 관광통역안내사,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, 화물차주(유통배송기사) → 월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
 - * **골프장 캐디**, 화물차주(택배 지·간선 기사, 특정품목운송차주) →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

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등 제도 보완

- (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)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,
 -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.
 -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(6월 고시 예정)*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.
 - * 예시) 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 등

- (고용장려금 제도개선)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, 지원대상·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,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,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.
-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*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,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, 4개 장려금**의 지원대상·업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.
- * 지역고용촉진지원금, 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안정장려금,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, 고용창출장려금, 고용유지지원금,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,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, 고령자고용지원금
- ** 고용유지지원금, 지역고용촉진지원금, 고용촉진장려금,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- ※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시행 이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

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22.(수) 12:00 2022. 6. 23.(목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22.(수) 12:00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 이원주 (044-202-7368)
		담당자	사무관 박경구 (044-202-7374)

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

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· 접수

- 그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· 프리랜서 대상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6월 23일(목) 9시부터 7월 1일(금) 18시까지 신청 누리집(covid19.ei.go.kr, PC로만 접속 가능)에서 「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」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.
- 이번 신청은 1·2·3·4·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, ‘특고’), 프리랜서 가운데
 - ‘21년 10월~11월 중 고용보험(근로자)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,
 - *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,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** 고용보험(근로자) 가입자라도 ‘21년 10월~11월 기간 내 고용보험(근로자)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
 - ↳ 단,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,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여 고용보험(근로자)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미포함
 -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,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*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.
 - * 단,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 가능
-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(covid19.ei.go.kr)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고, ①자격요건,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,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.

① 자격요건: '21년 10월~11월에 특고·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,
'20년 연소득(연수입)이 5천만원 이하

* 단, '22.5.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('21.5.13~'22.5.12)
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

② 소득감소요건: '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*에 비해 25% 이상 감소

* ①'21.3월, ②'21.4월, ③'21.10월, ④'21.11월, ⑤'19년 연평균 소득, ⑥'20년 연평균
소득 중 택1

□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6월 27일(월) 9시부터
7월 1일(금)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.

○ 업무시간(9시~18시) 내 신분증, 통장사본,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
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.

○ 다만,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.

<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일정>

신청일	6.27(월)	6.28(화)	6.29(수)~7.1(금)
출생연도 끝자리	홀수(1,3,5,7,9)	짝수(2,4,6,8,0)	누구나

□ 한편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*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, 해당
금액을 환수하고 「공공채정환수법」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
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

* (예)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

○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, 「형법」 제231조(사문서 등의 위조·변조)에
따라 고발조치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으므로
유의해야 한다.

□ 또한,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

○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
요청하지 않으며,

-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
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.

□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(☎1899-9595)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*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뉴스·소식 → 공지사항 → '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' 검색

□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“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” 라며,

○ “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,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강조했다.

□ 한편,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·프리랜서의 경우, 지난 6월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(200만원)을 지급 완료했다.

* 다만, 현재 이의신청 심사 중으로 이의신청 인용자 및 지원금 이체 시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7월 중 지급 예정

